

##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확산 촉진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확산 촉진 지원사업』의 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병국

###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수월성을 확보한 실험실 단계의 기초·원천 우수연구성과를 대상으로 후속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 □ 사업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 국정과제 28(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 □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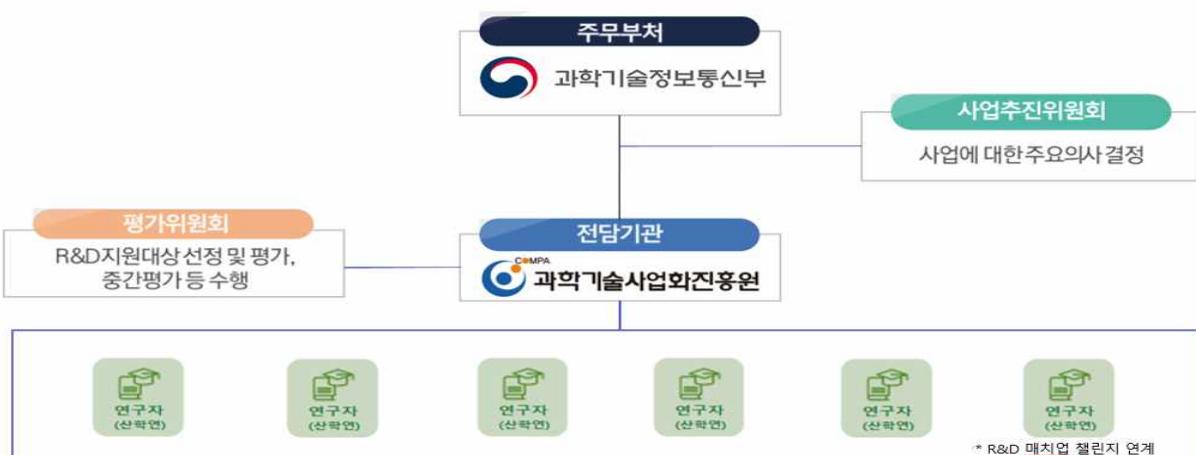
- 기술성숙도 제고와 현장 적용성 확보를 위해 기초원천 고도화 및 수요기반 실용화 중심의 후속 기술사업화 종합 지원
  - \* 연구개발단계(TRL), 기술 분야, 기술 적용처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원천 고도화, 수요기반 실용화로 구분하여 지원

- (기초원천 고도화) 기초연구 수준의 기술을(TRL 1~3수준) 대상으로 기술성숙도(TRL)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실증 등 후속 R&D 지원
  - ※ 연구개발계획·역량, 대상 시장·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기초 기술(TRL 1~3)을 선별해 기능 구현(TRL 4~5)을 위한 후속 R&D 지원
- (수요기반 실용화) 기 기능 구현이 완료된 기술(TRL 4~6수준) 대상으로 시제(작)품 제작 등 기술검증을 통해 사업화 연계 및 시장 진입 지원
  - ※ 후속 R&D·시작품 제작·기술검증·창업지원 등 종합지원을 통해 기업이 활용 가능한 수준(TRL 6~8)으로 스케일업

#### <유형별 지원 내용>



#### □ 사업 추진체계



\* R&D 대상기업 철린지 연계

## 2. 공고과제 및 선정평가 개요

### □ 공고과제 개요

- (당해연도 지원기간) '26. 4. 1. ~ '26. 12. 31. (9개월 내외)

※ 총 사업기간 : '26. 4. 1. ~ '28. 12. 31. (총 33개월 내외)

- (당해연도 지원규모) 2,250백만원 규모(375백만원 이내/과제당)

구분	'26년 신규과제(수)	'26년 지원규모
(유형1) 기초원천 고도화	6개*	375백만원 이내
(유형2) 수요기반 실용화		

\* 과제별 최대 2년 9개월, 최대 13.75억원(1차년도 3.75억원/9개월, 2~3차년도 5억원/년)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모방식) 제한공모

- (지원대상)

구분	구성 및 자격요건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근 3년*('23~'25년) 이내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기업 등) 및 연구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연계지원을 위해 최근 3년 이내 선정기술로 한정</li><li>** <u>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대표 연구개발 성과(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등)</u>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필수로 포함</li></ul></li></ul>
컨소시엄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화 지원 가능 연구기관(특허법인, 민간 기술거래기관, 기업* 등)과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가능(필요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시 <u>연구개발기능이 있는 기업</u>(기업부설 연구소 등 연구인력 보유기업)에 한하며, <u>기술이전 협약서 필수 제출</u>하여야 함</li><li>** <u>컨소시엄(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u>은 자율 구성이며, 과제 선정 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공동연구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li></ul></li></ul>
공통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li><li>■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li></ul>

## < 참고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①항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지원내용) 기초원천 고도화 / 수요기반 실용화 유형 중 선택하여 지원
  - ※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우수성과 100선) 선정기술의 기술성숙도(TRL 수준)에 따라 유형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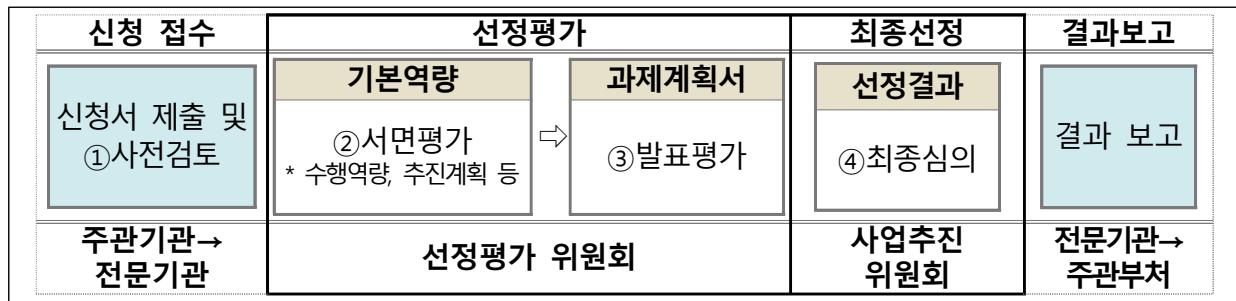
구분	지원내용
기초원천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구 수준의 기술(TRL 1~3수준)을 대상으로 후속 R&amp;D 기술성숙도 (TRL)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실증 등 후속 R&amp;D 지원</li> <li>■ 연구개발계획·역량, 대상 시장·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기초 기술 (TRL 1~3)을 선별해 기능 구현(TRL 4~5)을 위한 후속 R&amp;D 지원</li> </ul> <p>※ 시작품 설계, 개량 후속특허 확보(표준특허/3국 특허), 소규모 실증 등 <u>기술고도화</u> 관련 질적 성과목표 자율 제시</p>
수요기반 실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기능 구현이 완료된 기술(TRL 4~6수준) 대상으로 시제(작)품 제작 등 기술검증을 통해 사업화 연계 및 시장 진입 지원</li> <li>■ 후속 R&amp;D·시작품 제작·기술검증·창업지원 등 종합지원을 통해 기업이 활용가능한 수준(TRL 6~8)으로 스케일업</li> </ul> <p>※ 시제품 제작 활용률, 시험 인·검증, 기술료/매출액 기여/투자유치 등 <u>실용화</u> 관련 질적 성과목표 자율 제시</p>

## □ 선정평가 개요

- (평가목적) 추진역량, 추진목표 및 계획,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 (평가절차) ①사전검토(지원자격, 제출서류 등) → ②서면평가 → ③발표평가 → ④사업추진위원회 심의·확정
  - (사전검토) 지원신청 과제별 참여기관 신청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평가대상 지원신청 과제 확정
  - (서면평가) 과제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기관(컨소시엄 등), 주관연구책임자 사업 수행 역량, 추진계획 적절성에 대해 서면평가
 

※ 경쟁률이 2:1 미만인 경우 등 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 (발표평가) 과제별 수행계획·목표 적정성 및 수행역량에 대한 연구 책임자 발표·질의응답

### < 선정평가 절차 >



- (지원대상 선정) 전체 유형을 종합하여 산술평균(최고점, 최저점 제외)이 가장 높은 6개\* 과제(상대평가 방식)를 최종지원 대상과제로 선정
  - \* 유형별 지원대상 과제 수는 별도 구분없으며, 평가점수 적정수준(보통 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 가능

※ 「2025 R&D 매치업(match-up)」의 세션1(딥테크 창업지원 챌린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예비창업팀·창업지원전문기관은 선정평가에서 우선 고려 대상(1개 이내)
- (선정평가 지표(안))

평가항목	평가내용
연구개발 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과제의 도전성·창의성·정책 부합성</li> <li>- 질적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의 적절성·도전성</li> <li>- 성능에 대한 평가방법 및 항목(핵심기술/주요성능지표)에 대한 적합성</li> <li>■ 연구수행 계획의 충실성</li> <li>-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수행계획 제시 등</li> <li>- 단계별 실행 전략의 구체성 및 합리성(후속R&amp;D-실증-사업화/창업-투자유치 등)</li> </ul>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 컨소시엄의 추진 경험, 기술 실용화·확산 실적</li> <li>■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진의 전문성·사업화 경험</li> <li>■ 협업 네트워크 및 사업관리 체계의 구성 적절성</li> </ul>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및 지속 활용 가능성</li> <li>■ 우수 원천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가능성</li> </ul>
기술차별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대체 기술 대비 차별성 및 신규 성과 창출 가능성</li> <li>■ 연구수행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별성</li> </ul>
연구성과 도출 및 기대성과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기술의 기대성과</li> <li>- 연구성과 및 목표 달성 가능성(기술 고도화, 시장 진입, 창업, 수요기업 활용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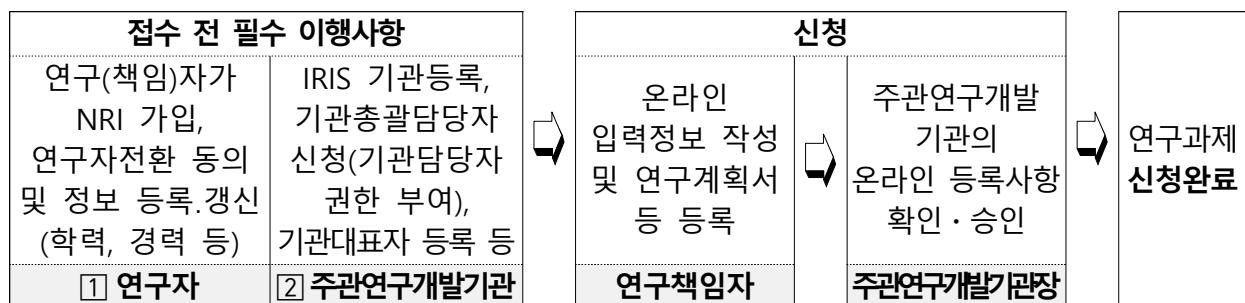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는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 신청방법

#### □ 신청방법 및 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 연구개발기관 확인 ·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각각 업로드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 세부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 (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①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등의(국가 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등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기관보유 시설장비 입력 : NRI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

- 시설장비 등록방법 :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R&D고객센터]>[보유장비정보] 메뉴에서 등록

-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과제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 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일까지만 가능함

## □ IRIS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 (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 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첨부자료) 신청 공문, 연구개발계획서(연구내용) 및 증빙자료,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별첨 업로드

구분	목록
별첨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별첨2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3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4 (필수)	기관참여확약서
별첨5 (해당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별첨6 (해당시)	기술이전확약서
별첨7 (해당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4. 신청기간 및 문의처

### □ 사업신청 기간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6. 1. 19.(월) ~ 2026. 2. 26.(목) (39일간)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6. 2. 12.(목) ~ 2026. 2. 26.(목) 14:00까지
주관기관 IRIS 담당 검토·승인기간	2026. 2. 12.(목) ~ 2026. 2. 26.(목) 14:00까지
신청절차	연구자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책임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 문의처

구 분	내 용
IRIS 등록 및 접수 관련	IRIS 콜센터 1877-2041 /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사업 내용 문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성과확산팀(02-736-9045/9038)

## 5. 기타사항

### □ 지원 제외 대상

- 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 최근 3년\*('23~'25년) 이내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기업 등) 및 연구자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연구자의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 예외)

- 동 공고에 해당하는 과제는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지원과제로,  
3책 5공 예외에 해당
  - 단,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0%가 넘지 않도록 조정 필요

### □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지원 · 부담(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 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구분	정부출연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중소 기업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 기업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총연구비) = 정부출연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현금)

#### □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 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

####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이지바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

#### □ 기타 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또는 경쟁률 1:1 이하인 경우 7일 이상 재공고 가능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및 사업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연차 점검 결과 및 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본 사업 공모 및 선정 이후 논문 철회 등의 사유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 선정 취소, 과제 중단 및 협약체결 해약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 마감일('26.2.26) 기준을 원칙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해당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 요청서 제출
  -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 계획서 상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 6. 향후일정

일정	내용
2026.2.26.(목) 14시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2026.3월 중	선정평가 실시
2026.3월 중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26.4월(예정)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